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I . 감사개요	3
1. 법적근거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법	
II . 주요 감사실시 내용	6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III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I. 감사개요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9. 11. 8.(금) ~ 11. 20.(수), 13일간
- ※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 11. 7.(목) ~ 12. 13.(금), 37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 : 8개 기관

도 본청 및 산하기관(7)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포함)•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소방학교, 18개 소방서 포함)• 강원도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개발공사

나.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 : 2개 기관

-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4. 감사반 편성

- 감사반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9명
- 사무보조 : 기획행정전문위원, 의정담당, 사무직원 3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8.(금)	14:00	총무행정관	위원회 회의실	
11. 11.(월)	10:00	평화지역발전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12.(화)	14:00	강원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 13.(수)	10:00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14.(목)	10:00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개발공사	위원회 회의실	
11. 15.(금)	10:00	강원인재육성재단 감사위원회	위원회 회의실	
11. 19.(화)	10:00	기획조정실	위원회 회의실	
11. 20.(수)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실·국·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위원별로 검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진행
- 실국·기관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7.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
- 전문위원실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작성

⑨ 강원연구원

수감 부서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 연구원 (8 건)	정책메모는 읽고 나면 이해가 되어야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그 표현방식이 추상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대안 제시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	도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메모 발행 시 각주를 사용하고, 외래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음.
	강원연구원 발굴 정책사업이나 도 자체 추진사업 등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주문함	고민하여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음.
	강사 사례비가 100만 원인 것에 대한 걱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이 비용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초빙연구위원의 역할과 활용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초빙 연구위원을 모시고 있으며, 연구위원이 다루는 전문분야에 대해 연구보조와 자문을 받고 있음.
	타 연구원 대비 연구 과제 수행실적은 어떤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전국 Top 5 순위 내 이며,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가 많은 편이라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양질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윤리 실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과제가 도정에 반영되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연구과제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음.
	시·군의 수행과제 수 증대 및 시·군정 정책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한, 도의 출연금 부담을 완화와 시군의 자발적인 출연 유도 필요.	시군과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앞으로 더욱 고민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연구과제는 공공의 재원으로 수행되었기에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의 연구과제 공개율이 매우 낮음. 개선 바람.	연구과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하겠음.

Ⅲ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총 건수

부서 및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 건수	비고
합 계	61건	
① 감사위원회	4건	
② 총무행정관	7건	
③ 기획조정실	12건	
④ 재난안전실	8건	
⑤ 평화지역발전본부	6건	
⑥ 소방본부	6건	
⑦ 강원도립대학교	5건	
⑧ 강원도개발공사	4건	
⑨ 강원연구원	5건	
⑩ 강원인재육성재단	4건	

2. 부서별 내용

⑨ 강원연구원

- (1) 정책메모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어려워 비전문가가 읽기엔 한계가 있음.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정확히 진단하려는 연구와 노력 필요.
- (2) 강원연구원 발굴 정책사업이나 도 자체 추진사업 등의 성과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에 대한 비판자 역할 필요.
- (3) 평화지역발전지원센터 필요성 관련, ‘통일 북방연구센터’의 업무 수행을 통해 평화지역발전지원관련 도정지원 필요함.
- (4) 접경지역의 국방개혁 피해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주문. 유희부지 무상 양여 등의 해결을 의해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요구됨.
- (5)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